

#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663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6월 28일  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사업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시행일을 “2020년 1월 1일”로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안 부칙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함.

#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2020년 1월 1일”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 〈 신·구 조문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<u>국공립 초등학교·특수학교</u>를 말한다.</p> <p>3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<u>특수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</u>를 말한다.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2020년 1월 1일</u>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국공립 초등학교·특수학교”를 “특수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〈 신·구 조문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<u>국공립 초등학교·특수학교</u>를 말한다.</li> <li>3. ~ 4. (생략)</li> </ol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<u>특수학교와 국공립 초등학교</u>를 말한다.</li> <li>3. ~ 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